

2023년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귀하

참조. 김진표 국회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용: 한국의 사형제 폐지

윤석열 대통령께

2023년 1월 26일 한국의 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31개국¹이 사형제 폐지 또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9일 한국의 지난 제 3차 UPR 중 26개국의 권고에 이어 국제공동체의 커가는 공감대를 다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² 이에 우리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지난 25년간 사형 집행이 없는 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할 것을 재차 호소합니다.

우리는 또한 2022년 12월 15일 한국이 사형 존치국의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및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 가입 고려를 호소하는 유엔 총회 결의 77/222 호 표결에 찬성한 것에 주목하고 환영합니다.

사형제 폐지는 분명 글로벌 트렌드입니다.³ 한국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었던 1997년말 법적 및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총 102개국(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총 61개국)이었습니다.⁴ 2007년말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2007년말 법적 및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총 134개국(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총 91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⁵ 2021년말 그 수는 더 늘어나 총 144개국(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총 108개국)이 되었습니다.⁶

¹ 호주, 프랑스, 파나마, 포르투갈, 스페인, 아이슬란드, 우루과이, 코트디부아르, 멕시코,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스위스, 영국,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마셜 제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이탈리아.

²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A/HRC/37/11, 27 December 2017, <https://undocs.org/A/HRC/37/11>

³ 사형제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1) 모든 범죄에 대한 완전한 사형 폐지국, (2) 전시범죄 같은 예외적 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만에 대한 사형 폐지국, (3) 10년 넘게 사형 집행이 없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그리고 (4) 사형 존치국 4부류로 나뉩니다. 첫 세 부류에 속하는 나라는 합쳐서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 불립니다.

⁴ Amnesty International, The death penalty worldwide: Developments in 1997, 31 March 1998, Index Number: ACT 50/004/1998, pp. 3 and 23,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ct50/004/1998/en>

⁵ Amnesty International, The death penalty worldwide: Developments in 2007, 15 April 2008, Index Number: ACT 50/002/2008, APPENDIX 1- LIST OF ABOLITIONIST AND RETENTIONIST COUNTRIES AS OF 1 JANUARY 2008;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ct50/002/2008/en>

⁶ Amnesty International,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2021, 24 May 2022, Index Number: ACT 50/5418/2022, ANNEX II: ABOLITIONIST AND RETENTIONIST COUNTRIES AS OF 31 DECEMBER 2021;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ct50/5418/2022/en> Death penalty: Support for UN call for moratorium on executions continues to grow, 19 December 2022, Index Number: ACT 50/6323/2022,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ct50/6323/2022/en>

이 글로벌 트렌드는 유엔 총회에서의 표결 패턴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유엔 총회는 사상 최초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인 결의 62/149호를 찬성 106표, 반대 46표, 기권 34표로 채택하였습니다.⁷ 2020년 12월 한국은 찬성 123표, 반대 38표, 기권 24표로 채택된 결의 75/183호에 찬성함으로써 격년으로 채택되어 온 결의 찬성국 대열에 처음으로 합류하였습니다.⁸ 2022년 12월 결의 77/222호는 역대 최다인 찬성 125표, 반대 37표, 기권 22표로 채택되었습니다.⁹

우리는 사형 집행이 생명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1993년 11월 23일 이후 거의 30년간을 사형 판결 하에 살아온 원언식 씨를 포함하여 59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있는 것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할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최근 “사형수 현상(death row phenomenon)” (가혹한 감금 여건에서 임박한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장기간 사형수로 지내는 데 따른 심리적 효과)이 오랫동안 비인도적 대우로 규정되어 온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¹⁰ 앞서 1989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소어링 대 영국(*Soering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이를 근거로 미국으로의 조건 없는 범죄인 인도를 막은 바 있습니다.¹¹

어떠한 형사사법체계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및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오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무죄가 밝혀진 사람은 언제든지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지만 사형에 처해진 경우 되살릴 수 없습니다. 블랙스톤의 유명한 법언대로 10명의 죄인이 형벌을 면하는 것이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낫다면 당연히 10명의 죄인이 사형을 면하는 것이 1명의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또한 국회의원들이 1999년 이후 현 제 21대 국회를 포함하여 매 대마다 총 9건의 사형 폐지법안을 발의하고,¹² 2018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 가입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⁷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8 December 2007: 62/149.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RES/62/149, 26 February 2008, <https://undocs.org/A/RES/62/149>

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6 December 2020: 75/183.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RES/75/183, 28 December 2020, <https://undocs.org/A/RES/75/183>

⁹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5 December 2022: 77/222.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RES/77/222, 6 January 2023, <https://undocs.org/A/RES/77/222>

¹⁰ OHCHR, UN experts warn of associated torture and cruel punishment: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 (10 October 2022);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2/10/un-experts-warn-associated-torture-and-cruel-punishment>

¹¹ ECtHR, *Soering v.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14038/88), Judgment, (7 July 1989), <https://hudoc.echr.coe.int/eng?i=001-57619>

¹² 대한민국 국회, 사형폐지특별법안(유재건의원 외 90인), 의안 제 152463호, 1999. 12. 7.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6007>;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정대철의원등 63인 외 92인), 의안 제 161085호, 2001. 10. 30.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7199>;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유인태의원등 175인), 의안 제 171129호, 2004. 12. 9.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9510>;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영의원등 39인), 의안 제 1800928호, 2008. 9. 12.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0K8H0P9L1U2I100R4A9K3S6X2M7O8;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김부겸의원등 53인), 의안 제 1806259호, 2009. 10. 8.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0V9B1C0R0A8Y1S1F1H4F0Z3F6D2N9;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성영의원등 10인), 의안 제 1809976호, 2010. 11. 22.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U0M1X1C2V2X1M3G3J2E0B5X4N4B1;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유인태의원 등 172인), 의안 제 1915958호, 2015. 7. 6.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M5Z0N7F0G6S1T3Z5Q5K1F1J4T3H0;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의원 등 75인), 의안 제 2022856호, 2019. 10. 10.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U9L1S0W1C0J1I4P3W7Q1J6R9C9T6;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의원 등 30인), 의안 제 2112795호, 2021. 10. 7.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K1H1I0C0B7F0V9D2D4H5N7Z1V2N6

주목합니다.¹³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1996년 7대 2 표결(95 헌바 1), 2010년 5대 4 표결(2008 헌가 23)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는 현재 계류 중인 사건(2019 헌바 59)에서 사형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형제 폐지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 지지에 걸맞게 사형 폐지를 위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즉각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 공식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
- 모든 사형 선고를 형기로 감형할 것
-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다양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한 모든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
-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우리는 또한 한국이 사형 선고가 내려질 위험을 포함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미국¹⁴, 일본, 중국¹⁵, 북한¹⁶ 등 사형 존치국으로의 추방 및 범죄인 인도를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2002년 자유권규약 위원회가 로저 저지 대 캐나다 (*Roger Judge v. Canada*) 사건에서 “[사형에 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6 조] 제 2 항에서 제 6 항의 예외는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당사국만이 원용할 수 있다. 사형 폐지국의 경우, 사람을 실존하는 사형 집행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형 폐지국은 개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 이들을 사형 집행의 방지 보장 없이 추방이나 범죄인 인도를 통하여 자국 관할권으로부터 퇴거시킬 수 없다”고 한 것에 주목합니다.¹⁷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들(2023년 3월 27일 기준)

단체

ACAT - Belgique (Action des Chrétiens pour l'Abolition de la Torture)

ACAT - France (Action des chrétiens pour l'abolition de la torture)

ACAT Germany (Action by Christians for the Abolition of Tortur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Arakan Rohingya National Organisation (ARNO)

Asia Democracy Network (ADN)

¹³ 대한민국 국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금태섭의원 등 32인), 의안 제 2015870호, 2018. 10. 4.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J8L1W0U0B4E1W8N0L1P5C1Q0W9N1

¹⁴ 강지남, “미국 보내면 사형… 제발 내 아들 살려주오”, 주간동아, 2008. 4. 2.,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84713/1>

¹⁵ 김기윤, “조선족→한족→한국인 신분 세탁한 30년 전 중국 공안 살해범 송환”, 동아일보, 2022. 5. 18.,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518/113468246/1>

¹⁶ HRW, “South Korea Investigates Forcible Return of Two North Koreans: Inquiry Should be Credible, Impartial, Independent”, 22 July 2022, <https://www.hrw.org/news/2022/07/22/south-korea-investigates-forcible-return-two-north-koreans>

¹⁷ HRC, *Roger Judge v. Canada*, Views, Communication No. 829/1998, para. 10.4, <https://undocs.org/CCPR/C/78/D/829/1998>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Inc. (BALAOD Mindanaw)

Centro para la Apertura y el Desarrollo de América Latina (CADAL)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Commission for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Cornell Center on the Death Penalty Worldwide

Death Penalty Focus

Federal Association of Vietnamese Refuge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orum marocain pour la vérité et la justice (FMVJ)

German Coalit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GCADP)

Human Rights Watch

Human Asia

Instituto de Derecho Penal Europeo e Internacional de la Universidad de Castilla-La Mancha (UCLM)

International CURE

Italian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U - Federazione Italiana Diritti Umani)

Judicial Reform Foundation (JRF)

Legal Awareness Watch Pakistan (LAW)

Lifespark

Nessuno tocchi Caino (Hands Off Cain)

Norwegian Helsinki Committee (NHC)

Regroupement des Jeunes Africains pour la Démocratie et le Développement section Togo (REJADD- TOGO)

SALAM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SALAM DHR)

Southern African Centre for the Constructive Resolution of Disputes (SACCORD)

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Witness to Innocence (WTI)

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WCADP)

개인

Lord Alton of Liverpool / Independent Crossbench Member of the House of Lords & Co-chair of the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Marzuki Darusman / Former UN Special Rapporteur/Commission on Inquiry (COI) membe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Sonja Biserko / Former Commission of Inquiry (COI) membe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 current chair at the Helsinki Human Rights Committee in Serbia

Tomás Ojea-Quintana /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